#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 1360 제안연월일: 2020. 3. 3.

제 안 자: 보건복지위원장

#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○ 한기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089 「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심의결과 송아량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25 「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병합하여 심의하기로함.

# 2. 대안의 제안이유

○ 심의결과 계류중인 의안번호 525와의 병합심의 필요성 발생.

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두 안을 병합하여 심의하고, 송아량 의원의 안을 일부 수정함.
- 제7조제1항 '시설'의 경우, '도구, 기계, 장치의 설치'로 확대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'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을'로 수정.

#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#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 중 "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를"을 "다중이용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을"로 한다.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
- 2. 별표 1의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[별표 1]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(제7조 제1항관련)

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
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
- 3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
- 4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 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
- 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
- 6. 그 밖에 구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

#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혅 했 제7조(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 제7조(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 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) 료장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) ① 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① -----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 다중이용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등 응급의료장비와 응급의료장 수 있다. 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 등 1.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또는 <신 설>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 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 정하<u>는 시설</u> 2. 별표 1의 다중이용시설 중 민 간이 운영하는 시설 ③~④ <현행과 같음> (3)~(4) <생략>